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(보험 등의 가입 의무)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 동법 제48조(과태료)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부과예고서(처분사전통지서) 및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였으나, 이사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(반송)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□ 다 음 □

1. 공고내용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5. 9. ~ 5. 23. (14일간)
3. 공고대상 :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굴\*\*\*\* \*\* Z\*\*\*\* C\*\*\*\*\* 외 45건
4. 만약, 위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 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(벌칙)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차량등록부서 자동차 과태료 담당(☎033-430-296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내역 1부. 끝.

2024. 5. 9.

홍 천 군

